

변경 전·후 대비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좌 등)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좌 등)	
1.~7. (생 략)	1.~7. (좌 등)	
8.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8. “간편번호”란 <u>계좌통합관리서비스</u> 애플리케이션(이하 “ <u>애플리케이션</u> ”이라 함)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 용어 명확화
9. “ <u>바이오정보</u> ”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9. “ <u>바이오정보</u> ”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용어 명확화 (로그인을 위한 수단으로 한정. 8호의 간편비밀번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
10. “ <u>바이오인증</u> ”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합니다.	10. (삭 제)	
11.~12. (생 략)	10.~11. (좌 등)	- 호 체상
13.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관의	12.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	- 호 체상 - 용어 명확화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관의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산림조합중앙회	마. 산림조합중앙회	
14.~15. (생략)	13.~14. (좌동)	- 호 체상
제3조(이용대상) (생략)	제3조(이용대상) (좌동)	
제4조(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u>계좌통합관리서비스</u> 홈페이지 및 <u>계좌통합관리서비스</u>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u>단, 채널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	- 불필요 문구 삭제 - 서비스 내용 명확화
제5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생략)	제5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좌동)	
제6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제6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 용어 명확화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u>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u>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u>과</u>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이오 인증을 통한 등록 불가)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 <u>인증과</u>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 <u>정보와</u>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용어 명확화 (2조와 통일)
③ (생략)	③ (좌동)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④ 바이오<u>인증</u>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⑥ (생략) 제7조 (은행 창구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u>은행</u> 중 <u>은행</u>창구를 운영하는 <u>은행</u>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u>이용등록 후</u>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u>이용등록 후</u>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조회) (생략) 제11조 (잔고이전·해지) ① 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제1항 제5호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현금(CMA평가금액 포함)만 보유한 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④ (생략) ⑤ 본 서비스에서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우체국의 정기예·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5조 및 제6조의 이용방법에 따라	④ 바이오<u>정보</u>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⑥ (좌동) 제7조 (금융회사 창구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u>금융회사</u> 중 창구를 운영하는 <u>금융회사</u>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조회) (좌동) 제11조 (잔고이전·해지) ① 고객은 제4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과 금융기관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에서 제2조제1항 제5호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현금(CMA평가금액 포함)만 보유한 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④ (좌동) ⑤ 본 서비스에서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우체국의 정기예·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4조 금융결제원이 운영	- 용어 명확화 (2조와 통일) - 용어 명확화 (4조와 통일) - 용어 명확화 - 용어 명확화 - 이용채널 명확화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⑥ (생략) 제12조 (계좌지급정지) ①~③ (생략)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 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u>동 서비스는</u>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⑥ (생략) 제13조(고객의 개인정보보호) ①~② (생략) 제14조~제16조 (생략) (신 설)	<u>하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과 금융기관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인증정책</u>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⑥ (좌 등) 제12조 (계좌지급정지) ①~③ (좌 등)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 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u>계좌지급정지</u>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⑥ (좌 등) 제13조(고객의 개인정보보호) ①~② (좌 등) ③ <u>금융결제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이 부정사용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찰청의 수사협조요청 등)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해지조치하고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u> 제14조~제16조 (좌 등) <u>부 칙 (2025. 6.19.)</u> <u>이 약관은 2025. 6.19.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하여 인증을 수행한 경우에는 종전 약관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제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u>	- 이용채널 명확화 - 용어 명확화 - 보안성 강화 조치에 따른 추가 -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